제311회국회 (정기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회의록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10월4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

심사된 안건

1.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 ····· 1

(13시42분 개의)

○소위원장 정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

○소위원장 정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국회쇄신과제에 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다섯 가지 국회쇄신과제를 선정하여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섯 가지 국회쇄신과제에 대해 공청회 진술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주제별로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해서 각 사항별로 합의할 부분은 합의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정희수 예.

○박범계 위원 지금 국회운영위원회 6인소위에서 저희 쇄신특위에서 다루는 이 다섯 가지 우선의제 중에 첫 번째 의원 겸직 금지 관련 사항 그리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관련 사항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의원 겸직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국무총리 겸직 문제만 남아 있는데, 저희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겸직 현행처럼 가야 된다 하는 게 거의 당론처럼 되어 있고요.

○김관영 위원 현행이라는 게, 합의된 내용, 이번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

○박범계 위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라니?

아니, 아니……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국무위원에 관해서만……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겸직을 허용하는 것……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 부분에 관해서만……

○박범계 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의 허용하는 것대로, 그렇게 당론이 어느 정도 모아졌고요. 그것 외에는 의원 겸직 금지 관련 사항이 다 합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6인소위에서.

그다음에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사항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조찬회의를 할 건데 거기서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관련 사항도 아마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두 가지, 의원 겸직과 헌정회 연로회원 이 문제는 지금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6인소위의 잠정적인 논의 합의사항으로.

그래서 우리 쇄신특위에서는 이것을 리바이벌할 게 아니라 지금 6인소위에서 현재까지는 다루지 않은 원구성 지연 방지 관련과 인사청문회 제

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해서 특화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그다음에 폭력 이 문제는 지금 저쪽 6인소위에서 의제가 됐고 논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의원 겸직 금지의 현행과 차이 되는 핵심 내용은 뭐예요?

○김관영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된 내용……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겸직 금지 관련 사항하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관련해서 6인소위에서 일차적으로 합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의원 겸직 금지와 관련해서 운영위 국회쇄신 6인소위 2차 회의 결과인데요, 우선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겸직 허용범위를 열거하는 제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직이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 공익법인·단체의 임원 등 공익 목적의 직만 허용하고 영리업무 종사도 금지하고, 다만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라든가 윤리심사위가 인정하는 영리업무의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특임장관 포함해서—겸직 여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논의가 더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논의가 결론이 안 났고요.

다음 세부사항 합의사항은 당선 전 겸직 금지직을 가진 경우에는 당선 후 휴직·휴업을 의무화하고, 겸직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의무화하고, 겸직하더라도 보수 수령 금지하는데 실비 변상은 제외하고,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위반 시에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겸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단체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선임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1차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국회쇄신 6인소위에서 1차 합의한 결과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되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 지원금 수령 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수령대기자도 지급 제외합니다. 그래서 18대 국회의원 중이라도 수령대기자도 지급에서 제외시킵니다.

다음에 기존 지급자도 일정한 범위에서 지급을 제외하는데, 그 범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헌정회 정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고요, 제명 또는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 박탈당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요건을, 4년 또는 1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직기간 요건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중에 의원연금제도 도입 여부가 논의됐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이러면 쇄신특위가 뭐가 필요 있노?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요.

○이진복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나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그러면 여기 5쪽에도 보면 교수 폴리페서(polifessor) 문제가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그때 언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빠져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쪽은 건들지도 않고 그쪽의 6인소위가 돼 버렸으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안 다룬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이진복 위원 저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당 지도부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쇄신특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필요 없지.

○이진복 위원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국회가 예산 들여 가지고 시간까지 들여서 쇄신특위를 합니까? 그쪽이 할 것 같으면 그쪽이 다 하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렇지요, 이쪽이 다……

○이진복 위원 그쪽이 이것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준 것 같으면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쪽 하면서 이것을 참고로 하라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언론도 웃고 국민도 웃을 일이지, 국민들 눈 속이는 짓이지 이것을 뭐하러 쇄신특

위를 왜 만들었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이진복 위원 저는 이 회의 자체를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정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 몇 개 했으니까 몇 개 하고 몇 개 하고 하는 식으로 나눠서 하자는 이야기도 틀릴 뿐만 아니고…… 이것 언론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쇄신하자 해 놓고는 운영위원회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고 또 '우리 또 논의하자'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 중복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거기에서 2차 6인소위에서 다 해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그때 그 얘기가 없었습니까, 6인소위 할 때?

○박범계 위원 새누리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저희 수석부대표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무게 있게 전달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데 이진복 간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맨 앞 장에 있는 의제 중에 국회폭력 예방·처벌 강화 관련 사항은 지금 운영위 6인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것은 거기에 양보랄까 하면 되고, 총선 후 원구성 지연방지 관련 사항하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관련 사항은 저쪽에서 아직 주요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제도 굉장히 큰 의제…… 엄청나게 큰 의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우리가 이 논의를 해서 오늘 어느 정도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두 번째는, 오늘 저희 의총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의원 겸직 금지 관련해서는 큰 논쟁은 없었는데 헌정회 연로회원 관련해서는 재직기간을 불문한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쇄신특위의 존재 의의로 놓고 볼 때 우리가 훨씬 강화된 안을 하나의 권고적 안으로 한번 의논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진복 위원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박 간사님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박범계 위원 그렇다고 문 닫자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이진복 위원 이것 참 지금 우리가 웃기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여실히 보이잖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우리가 해서 거기 운영위에서 넘어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 본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6인소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주물럭주물럭해서 다 해 버리고, 또 만약에 원구성 지연 이것도 관련 법이 많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했는데 6인소위에서 아침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것 법안 내 가지고 한두 개 합시다' 이러면 그것 끝나 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진복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운영위 6인소위에서, 쇄신특위가 이렇게 안을 가지고 이런 것을 공청회까지 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좀 지켜봐 주는 것도 예의인데 그것을 그렇게 먼저 논의를 해 버리니까 우리 위상이 아주 우습게 됐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나도 이것 자료 보고 알았어요.

○이진복 위원 저는 이것을 양당 원내대표한테 분명히 선을 긋고 하든지 해야지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쇄신특위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함진규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쇄신특위가 어느 특정 정당의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명실공히 여야 합의로 해서 이렇게 당에서 대표해서 나왔는데 운영위는 운영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세부사항까지 해서 지침을 주는 식으로 하면 애초부터도 그런 말씀, 이용섭 위원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원혜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여기서 해서 올리고, 운영위에서 볼 때 또 양당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첨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다 해 놓고…… 그러면 저도 헌법기관인데, 당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쇄신특위 활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운영위 의견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 아니잖아요. 쇄신위 위원들이 여야 해서 협의해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국민들 정서 같은 거라든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여기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지도부에서 하면 우리까지도 괜히 쇄신특위에 들어와

서 실질적인 논의는 해 보지도 못하고 당에서 또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던져 주는 것 갖고 결정해 버리면 욕만 잔뜩 먹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봐도 각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테고 당의 생각 또 본인 생각 가미해 가지고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 의사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는 것이 순서고 모양도 맞는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 여야 쇄신특위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한 과정과'……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결론이 도출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리로 가서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하면 모를까 자기들이 다 해 버리고 우리들이 나중에……

물론 지금은 박 간사께서 이야기한 것이 맞아요. 앞에 자기들이 폭력까지 하다가 말아 버렸으니까 원구성 지연하고 인사청문제도, 또 국회쇄신위 이 건 말고 앞으로 다른 건도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 또 이슈가 된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실컷 이야기도 많이 하고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 가지고 공청회까지 하고 했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아예 뒷전에 둬 버리고 자기네 여섯 사람들이 기존에 낸 법안 가지고 주물럭……

○이진복 위원 박 위원님은, 거기 다 들어가 있네요.

○박범계 위원 우리 둘이 들어가 있네요.

○이진복 위원 같이 논의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희수 우리는 누가 들어갔어요?

○이진복 위원 우리는 이철우 위원이 들어 있지.

○소위원장 정희수 이철우 위원하고, 또 누가 들어가……

○이진복 위원 이철우 위원이 들어왔습니까?

○함진규 위원 예, 그럼요.

○김관영 위원 여기는 이현재, 김도읍.

○박범계 위원 이철우 위원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이진복 위원 거기 소위원장이 누구지?

○박범계 위원 이철우 위원장입니다.

○김관영 위원 그리고 저희 둘이 겹치는데, 전체적인 총론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쇄신특위라는 게 운영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취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그쪽은 기다리고 여기서 안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통과의례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사실 쇄신특위를 구성한 취지에 맞는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운영위가 월권을 했네, 내가 보니까.

○이진복 위원 아니, 운영위가 사실은 이 쇄신특위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구태여 논의한 뜻을 나는 잘 모르겠네.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그리고 이런 게 1차·2차 회의가 있다고 하면 구성은 했다고 치더라도…… 나는 전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런 회의 논의를 한다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 무시하고 여기서 다시 하지요, 뭐. 우리가 해서 올리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선 어차피 귀중한 시간을 냈으니까 원구성 지연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이진복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쇄신특위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안 서요.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초창기에도 입법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안 주는 것으로 했을 적에 많은 위원들이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너희가 논의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자구 고치지 않고 거의 통과시켜 주겠다'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해 버리고 몇 가지를 나누어서 하자는 정도로 가는 것 같으면 나는 쇄신위원회 이것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입법권도 없는 사람이 시간 쪼개 가면서, 예산 낭비해 가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이 일을 왜 합니까?

쇄신특위를 양당 합의를 해 가지고 만든 뜻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바로 보려고 이것을 만들었던 그 큰 뜻은 어디 가고 없고, 이것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옥상옥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자체가 나는 원내대표단이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단한테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국회쇄신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중복해서 이렇게 일을 할 것 같으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가지고 생산적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면 무엇을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한테 이것을 우리 쇄신위원회한테 맡겨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지금 하는 식으로 소위에서 구성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쇄신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맞지요. 국민 속이는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 위원 저는 절충안을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6인소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야 초선이니까 국회 운영의 보이지 않는 관행과 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6인소위에서는 우리가 공청회를 한 것을 충실하게 백 데이터로 반영을 했어요. 고려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회의 자료에 거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알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기본 전제는 제가 보기에는 쇄신특위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 문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양당의 원내 지도부들이 들어가 있는 회의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국회 쇄신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좀 있지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쇄신특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자제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은 현실이고.

그러면 제가 절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구성 지연하고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우리가 빨리 논의를 해서 이것을 내일 아침에 저희들 6인소위가 2명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나온 것을 가지고 내일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쇄신특위에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네요, 위원장님. 이진복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을 깨자 이것보다는.

○함진규 위원 다 여기서 본 것을 리뷰해 가지고 다시……

○김관영 위원 당연히 그것은 가능하지요.

○박범계 위원 그다음에 또 쇄신특위의 존재의 의미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헌정회 연로회원 같은 경우에 이게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 있거든요.

○함진규 위원 그것도 제가 이따 드리고 싶은 말씀에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저는 쇄신특위라면 쇄신특위다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진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론이 볼 적에 의원 겸직에 관해서 운영위원회 6인소위가 낸 안하고 만약에 쇄신특위가 낸 안이 서로가 또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돼요.

○박범계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진복 위원 이것은 쉽게 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가야지, 이것을…… 그래서 자꾸 옥상옥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헌정회 연로회원 이 문제도 지금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것 같고 당도 의견들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6인소위하고 우리하고 서로 상이한 점이 나타난다 그러면 비판 대상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나는 참 난해한 것 같은데요.

○함진규 위원 모였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지요. 기왕 여기 모였는데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보다 스크린 한번 해 보고……

○소위원장 정희수 나는 내 쪽의 원내대표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택을 하라. 6인소위가 다 하는데 다 바쁜 사람들 굳이 모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야 좋지, 팔짱 끼고 있으면 6인소위가 다 하는데. 너희들이 해라 이것이지.

그러면 쇄신특위가 할 일은 그것 하는 것 말고 다른 것 하라는, 아주 좋게, 넓게 생각한다면 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진규 위원 어차피 이것 소위에서 우리가 결정해도 쇄신특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다룰 것 아니에요?

○박범계 위원 예, 그렇지요.

○이진복 위원 아니지요, 절차가 그렇게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함진규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이고 우리 내부……

○박범계 위원 우리 쇄신특위 전체회의에는 당연히 회부해야지요.

○이진복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쇄신특위 전체회의를 만약에 소집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나누어서 하기로 했다, 이것을 우리 쇄신특위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겠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만약에 더 웃기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들 전체 이름으로 법안 발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진복 위원 회의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만든 하나의 안하고 운영소위 여섯 사람이 만들어 낸 안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도 웃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영소위 6인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 가지고 여기서 주물럭주물럭해 가지고 만들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 버리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겸직금지라든가 연로회원 여기에 우리가 무슨 안을 낸다 하더라도 이미 합의되어서 끝난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서영교 위원 6인소위에 두 분이 들어가셨으면 하실 때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한다 이런 게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박범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우리 초기 논의부터 우리 전체회의 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것이 입법심사권의 문제로 조절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는 논의 차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권고적 사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힘이 없는 특위지요.

그러면 제일 나이스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선택하는 한 세 가지 주제, 그리고 그것이 아닌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양해를 구하는 이런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처음부터의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함진규 위원 본인들이 그것을 좀 막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쇄신특위에도 겹치고 운영위에도 들어가 계신데, 제가 들어갔으면 제가 이것을 말해서 막을 것인데…… 왜냐하면 운영위는 이것 말고도 다루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쇄신특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김관영 위원 여기는 운영위 중에 국회 쇄신, 이 쇄신 주제만 다루는 것으로……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쇄신특위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이철우 위원님이 안 오셔서……

○박범계 위원 2개 남아 있잖아요, 2개.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쇄신특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막아야지. 다른 것을 논의를 했어야지……

○소위원장 정희수 이것 만약에 언론이 알았다 하면 이것은 아주 웃기는 그것이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겸직 금지나 헌정회 연로회원 했다 하더라도 국회쇄신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지도부 간에 게리멘더링하는 그것으로 별도로 가고 우리하고 따로 노는 것이지, 쇄신특위 잘 만들어 놓고 여기는 들러리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다 하게 되고……

○이진복 위원 저도 그래서 그것은 좀 불쾌합니다마는, 위원장님은 저보다 더 불쾌하시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을 저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쇄신특위에 대해서 운영위하고 쇄신특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지 않는 이상 이 일을 손대면 잘못하면 아주 비판받을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것은 비판받을 일이에요. 이것은 저는 정말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쇄신특위에 들어왔는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특히 운영위원회는 당 지도부가 들어가 있는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지 못하고 일을 중복시킨다는 것은 정말 아이도 웃을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을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해야 옳다고…… 이것 무슨 기분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함진규 위원 이게 그런데 마감 시한이 있나요? 활동 마감 시한이 12월까지인가요?

○이진복 위원 11월 1일 날 법안을 내 달라는 건데……

○함진규 위원 11월 1일? 그러면 감사 있고 그래서 시간은 별로 없네.

운영위에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 다루는 것 중에 1건에 불과하겠지만 우리한테는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쇄신은 뭘 쇄신하느냐고, 다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운영위에서는 다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 우리는 할 게 없는데……

그러면 운영위 것 다른 것을 뭐 줘요, 쇄신할 것. 이철우 위원님이 계셔야지 무슨 얘기를 하지……

○서영교 위원 이철우 위원도 오라고 그래. 그래야지 양쪽을 다 문제 제기를 하든지 하지.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나는 앞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박범계 위원 이철우 위원님이 드라이브를 제일 세게 걸어 가지고……

○함진규 위원 하지 말라고요?

○박범계 위원 아니, 찾아서……

○함진규 위원 소위를 했지.

이철우 위원이 6인소위 위원장이에요?

○박범계 위원 소위원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묘하지……

○서영교 위원 엉겁결에 했어, 내가 딱 보니까 그랬어. 엉겁결에 한 거야.

○박범계 위원 엉겁결에는 아니고……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이것을 두 번이나 2차 회의 할 때까지 나는 전혀 내용을 몰랐네.

○함진규 위원 재선 위원님이 하시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따라갔나 보지.

○박범계 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그럴 사람이에요?

○이진복 위원 수석님, 이것을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할 적에 우리 수석님이 계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막아야지.

○이진복 위원 쇄신특위에서 이것 어젠다로 정해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런데도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왜냐하면 그 안에 공청회 한 것 결과 다 보고드렸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합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6인소위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리고 법안을 11월 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위 쇄신특위는 회의체가 아닙니다, 사실상 간담회 형식입니다, 간담회 형식. 여기는 정식적인 회의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저희들이 원내수석부대표한테 많이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운영위 나름대로 여섯 분이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안을 하나 만들어 보는 형식이고, 또 여기는 소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충돌되거나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위의 상위 단계든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단계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못 막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것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 못 하게 하셨어야지. 그렇잖아요? 쇄신특위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진복 위원 그런데 이것 참 묘한 거예요. 지금 이것 결말이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당이 그냥 대충 짝짜꿍해서 지도부의 의견 반영해서 끝났다는 소리 하면 어디에 가서 쇄신특위

했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아까 나도 수석한테 얘기 듣고, “아, 이것 1번하고 2번은 소위에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것 2차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이렇게 되니까 이것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 순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야당 쪽에 계신 분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성실한데 우리 진작 해야 될 여기는, 물론 한 분은 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것 어떡하지?

(이진복 위원 퇴장)

○박범계 위원 이철우 위원님이 파죽지세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무조건 밀고 나가?

○박범계 위원 논의가 쉬워. 논의를 쉽게 하시더라고, 이분들이.

○함진규 위원 그것은 아니지.

○박범계 위원 이렇게 뭐…… 아무튼 논의를 쉽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 논의 성과가 있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냥 다…… 아니,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대부분 그 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고……

특별히 무슨 상위법하고 문제가 된다든가 기존 관행하고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좀 권고적으로 의견을 내서 조정을 할 수는 있어도, 쇄신특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운영위에서 이것을 다 만드는 것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 뭐 하려고 만들었어, 그런 쇄신특위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운영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올라오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게 자기들도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쇄신특위 당신들이 이런 것을 했지만……’

○김관영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양당 수석부대표가 그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을 별도로 또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매우 그런데 쇄신특위가 만들어지고 간사 발령을 내고 그다음에 6인소위가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두 개에다가 플러스 원, 한 의제를 더 추가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운영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쇄신특위를 만들어 놓고, 이미 이것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기구인데 이렇게 형해화시키면 그것은 국민을 정말 속이는 거고, 그래서 명문상으로도 더 이상은 곤란하다. 이것은 쇄신특위에 논의의 주도권을 좀 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서 문 닫는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함진규 위원 설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지요.

○서영교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도권을 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조금 편안하게 보면요, 당연히 결정의 마지막 권한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고 이런 기본 내용을 가지고 원래 여야 수석끼리 합의하기로는 6인소위 만들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논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결정권은 여기에 있고.

그러면 거기도 논의를 했으니 ‘그래, 그 논의를 우리도 한번 볼까?’ 그렇게 하되 여기는 참고일 뿐이고,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 참고한 논의가 ‘어? 당신들이 했던 게 우리한테 맞네? 그러면 우리가 당신 것들을 수용할 게’ 이런 정도로 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 안이 이것이니 그것은 논의했고 우리가 참고한 것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로 결정을 지어서 위상을 잡아 나가시는 게 풀기에는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얘기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다 논의하는데 거기서 6인소위를 구성해서 했다고 하니까 위상이 흔들린다. 그런데 위상은 확실히 여기가 전체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만들어 낸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하겠다. 그런데 이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논의하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정리를 하시고 여기가 중심이 돼서 가셔야지요.

○박범계 위원 그런데 여기가 법안심사권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지.

○함진규 위원 아니, 없어도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쇄신특위에서 결론은……

○박범계 위원 아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얘기하는 무게의 중심을 여기에 둔다는 것과는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법안심사권이 없는 거야.

○소위원장 정희수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위에

서 별도의 소위가 하나 만들어진 거지요, 쇄신소위가. 6인소위가 만들어진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6인소위는 정식 국회법상 소위원회가 아니고 간담회 형식의 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또 우리 위원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 그러면 6인소위라는 것은 국회법상에 있는 소위가 아니고 간담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니고, 간담회 형식의 소위원회입니다.

○서영교 위원 주고받는 내용을 하는 거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소위원장 정희수 주고받는 내용,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될 이유는 없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함진규 위원 기분이 나쁜 거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문제가 틀리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6인소위는 간담회 형식의 소위원회, 그러니까 여야 위원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의결, 어떤 합의점을 찾는 그런 간담회 형식의 소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참고사항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다룰 때 이것을 참고해서 하라고 참고사항으로 잡아 주시면 되는데 결과라고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참고로 하면 딱 되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참고사항입니다.

○함진규 위원 참고사항이라고 해야지, 여기 안 가시지요. 가셨잖아요, 지금. 참고사항으로 안 해 놓으셨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가신 거예요?

○함진규 위원 갔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가셨지요. 참고사항으로 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이것은 참고사항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그것 할 수는 있네요.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 안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실 의견 수렴을 어디에 가서 또 해 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의견이 맞는지도?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6인소위가 의견을 냈으니 이 의견도 하나 수렴하고 또 다른 데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고, 쇄신 내용은. 그러는 중에 좀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 이런 정도로만 평가하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오늘은 거기의 참고사항을 주셨으니까 다음 주 쯤이든 잡아서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 가셔서 의견 본인들이 검토하셔서 그때 의견 내고 우리 결론을 도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없어서……

○박범계 위원 그것은 늦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6인소위는 이 발걸음이 빠르고 경쾌해.

○함진규 위원 대충 하니까 빠르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이게……

○박범계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철우 소위원장이나 우원식 의원이나 비교적 논의를 뭐 군더더기 없이 하는 그런 성품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운영위원회라는, 법안심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일종의 고유의 지위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 등등이 다 결부돼 가지고 빨라.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 7시에 하는 회의면 거의 다 끝낼지도 몰라요, 그리고 쟁점 한두 개만 남겨 놓고. 그러면서 그것을 양당 의원총회에 맡겨 놓는 수준으로 끝낼지도 몰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룰 게 아니고,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실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라도 빨리 논의를 하자 이 말이에요.

○함진규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11페이지에 보면 연로회원 지원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박범계 위원 그것도 지금 다른 의견 수정안을 낼 수가 있잖아.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 내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재직기간 요건은 두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국민들 정서는……

○박범계 위원 결정이 아니지, 거기에서 그냥 정한 거지.

○함진규 위원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런 식으로 참고사항으로 해 놓았으면…… 이것 쇄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뽑아 줄 때는 어떤 이유로든지 4년 임기 채우는 게 정상인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게 역할을 한 것으로 국민 정서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재직 요건은 두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기존에 국민들이 질타하는 것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사항이라고 적어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줬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면. 그런 것들을 바꿔야지요.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6인소위 할 때도 얘기가 집중적으로 의논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왜 이것을 안 두기로 했냐? 4년 안도 있고 1년 안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제명이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중간에 박탈당한 경우' 그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만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했는데 6개월만 하고, 승계해 가지고 6개월 하고 그만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을 했다 이거예요.

○함진규 위원 에이, 굳이……

○김관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비례대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앞 순번이 있으니까 나중에 승계해 가지고 6개월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6개월을 한 국회의원하고 4년 풀리(fully)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냐,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자기 책임으로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박탈당한 경우는 오케이, 그것은 우리가 제외시키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보궐선거 해 가지고 중간에 당선돼 가지고 예를 들면 1년을 했다, 2년을 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못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냐? 그런 것은 어차피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회의원을 한 경우라면 그 경우는 우리가 봐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함진규 위원 그것은 우리 논리이고……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정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연금 받는다 하는 것이 안 맞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같으면 적어도 4년은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그것은 인정을 하겠다 이거지.

○김관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때 연로회원 검토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 제도나 이런 것도 보니까……

아까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다시 원내대표하고 한번 논의를 할게요. 논의하고, 또 모처럼 귀중한 시간 냈는데 이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를 드렸고. 또 이렇게 나왔던 얘기도 수석이 나중에 회의할 때……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하고 뭐하고 하면 3건은 마무리가 되잖아, 급하게.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까지 3건은 아침 먹으면서 자기들 법안 여러 사람이 낸 것 있으니까 주물럭주물럭하면 발 빠르게 경쾌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그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고 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제대로 하문해서 사후적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이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나중에 후속적으로 법을 내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개정법이 될 수가 있겠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특위 위원님들께서 특위 위원회에서는 법안을 제안을 못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서명해서 내실 수 있고요. 그 법안은 다시 운영위에 와서 심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관영 위원 그때 합의가 그렇게 됐었습니까? 이게 만약에 쇄신위원회에서 우리 안으로, 쇄신위의 안으로 합의가 되면 쇄신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연대해서 발의해서 법률안을 내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희수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되었지요.

○함진규 위원 법안 발의권 외에 안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연대책임을 지고 해야지.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자기들 그쪽 운영위는 운영위 대로 돌아가고 우리는 우리 대로 합리적인 안을 한번 내서 주는 것으로 하는데……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소위원장 정희수 우선순위는 원구성하고 이거 두 개 먼저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박범계 위원 예.

○함진규 위원 최대, 맥시멈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박범계 위원 아니, 지금 겸직……

함 위원님……

○함진규 위원 아니, 시간을 전문위원께서 언제까지 우리가 해 줘야지만, 최대, 맥시멈 언제까지 해 줘야지만……

○박범계 위원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앉은 자리에서 조금 진도 나갈 것이 있으면 진도……

○함진규 위원 아니, 사람들이 갔으니까 하지 말자고……

○박범계 위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절박하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지금 쇄신특위 기간은 12월 말이지만요……

○박범계 위원 내일부터 국정감사 들어가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수석부대표회의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국회운영위원회가 양당 각 3인씩 6인소위를 구성해 논의해 가지고 11월 1일 목요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11월 1일까지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본회의장까지만 올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는 6인소위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때는 쇄신특위를 만들겠다고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죄송한 말입니다만 특위가 먼저 구성되어 있고 6인소위에 대한 것은 후에 합의하신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 후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특위가 먼저 만들어졌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특위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함진규 위원 특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것 만들 때?

○박범계 위원 알지요.

○함진규 위원 알아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특위가 먼저 만들어졌고, 특위가 했던 내용을 6인소위가 좀 더 발 빠르게 간추려서 11월 1일 날 낸다 이런 내용인데, 특위는 공청회 하고 그다음 회의 하는데 벌써 거기는 뭐 만들고 이런 상황이군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다음 주 중에 국감 다른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번 시간이 안 나나요? 안 나면 토요일 날이라도 한 번 잡든가……

○김관영 위원 원래 취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세 개 논의했다면 저쪽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나머지 세 개 우리가 또 합의해서 저쪽으로 보내면 저쪽에서 논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해서 빨리 처리하자 이런 취지예요.

○서영교 위원 성폭력특위는 12월 말까지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다 똑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12월 말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모든 특위가 12월 말까지인데 발 빠르게 한다고 했으니 그것은 조율하면 되겠네요. 여야 원내수석이랑 조율해서 우리에게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자라고 하든지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늦게 하면 늦게 하고……

○함진규 위원 그러면 날짜를 다시 한번 잡고요. 오늘은 참고사항을 줬으니까 가져갔다가……

○소위원장 정희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뭐냐 하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서영교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가지요. 가서 우리가 법안 낼 것은 내고, 이미 저쪽에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함진규 위원 기자회견 할 것은 하고 발표할 것은 발표하고, 우리가 남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은 분명히 원내대표한테 전달을 하고, 이 내용은 박 간사가 그쪽 원내대표한테 전달해 주이소.

○박범계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이동풍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이동풍이에요. 뭐가 문제냐 하면 저도 그 점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수석대표를 좋아하는데 6인소위가 정식 회의체도 아닌데 이것이 우리 의총에까지 보고가 됐어요.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도 지금 회부가 안 된 안건을 우리 의원총회에 보고가 됐다니까요, 기정사실화되어 가지고.

○서영교 위원 오늘?

○함진규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박범계 위원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간사님 말씀처럼 여기서 문을 닫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문 닫는 것에는 반대예요.

○함진규 위원 아니,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고……

○박범계 위원 그것은 정말 불명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제대로 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약간은 제 느낌으로는 타협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쇄신특위에서 김관영 위원님이나 서영교 위원님도 원칙적인 분들이시니까, 물론 선배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해서 쇄신특위다운 안을 빨리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해서 내놓자 이거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운영위원회가 손을 대지 않은 두 가지 이 의제에 대해서도 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럽시다.

○박범계 위원 그 말씀이에요.

○함진규 위원 시간을 잡자고요, 몇 번에 걸쳐서.

○박범계 위원 아니, 오늘은 뭐 하고? 끝내자고?

○서영교 위원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함진규 위원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없는데 뭐 어떻게 얘기해요?

○소위원장 정희수 오늘은 오늘 나름대로……

○박범계 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함진규 위원 연락 한번 해 봐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지역에 내려갔어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이든 일요일 날이든 한번 잡아 가지고……

○박범계 위원 저 토요일 일요일은 안 돼요.

운영위 소위는 7시부터 해요, 아침 조찬을 같이 먹으면서.

○함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못 할 것이 뭐 있어요.

○서영교 위원 간사님이 우리한테 하자고, 위원장님이랑 제안해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면 되잖아.

○박범계 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자니까.

○서영교 위원 여기 간사님이 더 중요하지.

○박범계 위원 지금 소위원회 정족수는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의사정족수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박범계 위원 되니까……

○함진규 위원 정족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또 상을 당하고, 나 혼자……

○서영교 위원 대립되는 것 아닌데 빨리 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

○박범계 위원 대립되는 것 아니잖아.

○함진규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 없이……

○서영교 위원 의견만 주고받으면 되잖아?

○박범계 위원 그럼.

○김관영 위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영교 위원 좀 대립되는 내용이면……

○김관영 위원 함 위원님이 또 혼자 하시기는 부담……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한번……

○소위원장 정희수 결론은 내지 말고……

○서영교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정희수 논의만, 의견만……

○박범계 위원 아니, 저는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헌정회 재직 기간 전적으로 동의해요.

○함진규 위원 그것 말고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수첩에도 많이 적고 그러는데 저는 저번에 정치학자들 모였을 때도 그 소리를 했어요. 여야가 앞다퉈 그냥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막 하고, 사실은 뭐라 그럴까, 직분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제가 여당으로 그때 위원장님이 사회 보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 처음 돼서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원들 자동차 사 주는 것마냥, 내가 누구라고 이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정치학자가 그것을 대중이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의 동료 재선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차 사 주냐.

차를 어디 사 줘요? 그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개별 의원 중에서도 여야를 넘나들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국민들을 납득하게 발표해 줄 것을 발표해 줘야지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국회의원들 죽일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앞으로 1시간 내에 마무리를, 의견만……

○서영교 위원 의견만 내는 것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파트별로 정리를 하고 다음 번 모임에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결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정리된 내용을 소위 위원들한테 정리해서 전달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저거는 저거대로 한다고 하더

라도 순서대로 한번 해 볼까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깐……

○소위원장 정희수 말씀하세요.

○서영교 위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는 그때 같이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 곁다리로 붙여서 해도 되고, 사실 이것을 먼저 얘기하긴 그런데 말씀처럼 모든 국민이 사실 막 내려놓기를 바라는 것은 둘째이고, 되게 많이 가져서 저것 좀 뺏었으면 좋겠는 얄미움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는 당연히 저도 사주는 줄 알았어요. 자동차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그다음에 비행기, 고속버스, KTX 당연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떠 있어요, 특권 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정리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른 특권이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쇄신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 쇄신특위의 기본목적이…… 국회에 국민들은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 한 가지는 안 싸우고 제발 잘 갔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쇄신특위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처음 발표를 하기 전에…… 뭐냐 하면 '월급 내놓겠다' 이것은 계속 제 살 깎아 먹기고요 큰 의미가 없어요, 필요할 때 그것을 하더라도. 이 쇄신특위가 갖는 제일 큰 의미는 국회가 싸우지 않고 생산성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국회의원들에게 잘못된 오해,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해 놓고 '아 그랬구나. 국회의원이 저런 상태였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자기 가지를 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국회의원들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그다음에 자기 쇄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정희수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함진규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불필요하게 아무 관련이 없는 특권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을 검토해 봐서……

○서영교 위원 과감하게 정리해야지.

○함진규 위원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직무와 관련 있는 것까지도 전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자는 것이지요.

한마디 더 붙이면 지난번 5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됐지요? 5월 29일 초선 의원들 다 모아 놓고 회의하는데, 하루 해도 종전에는 그렇게 줬나 봐. 한 달 치 세비를 줬었나 보더라고. 언론에서는 다 그렇게 썼어요, 이틀인가 하루 일하고 세비 받아 간다고. 내심 그래서 이것 좋긴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루인가 이틀 치 줬지요? 그러지 않았나요?

○서영교 위원 그럼요.

원래 그러면 예전에는 한 달 치를 다 줬어요, 하루 일하고?

○박범계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뭐 한다 한들…… 기사감이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겸직 금지 관련해서 이미 2차 소위에서 한 것에 추가해서 한번 논의해 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단 국무총리하고, 5쪽이 됩니다.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 겸직 경우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범계 위원 예, 물론입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이것은 향후에 하자 하는 이것 하나하고, 여기 폴리페서 문제, 그때 얘기 나오니까 이 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리업무는 종사 금지를 했는데 맨 위의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의 임원 등 공익 목적의 직은 허용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율사 출신이시니까……

○박범계 위원 이것이 제 의견이에요.

○소위원장 정희수 이것은 허용하자 이거예요?

○김관영 위원 그렇게 한 것이지요.

○박범계 위원 예.

○소위원장 정희수 이것은 괜찮아요?

○함진규 위원 이것은 비난 가능성이 없나요?

○소위원장 정희수 이것도 왜 그랬느냐 하면 비영리 공익이라 하더라도 또 별도의 간접적인 영

향력이 미쳐지지 않습니까?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여기 밑에다 적어 놨는데, 세부사항의 세 번째 보면 겸직에 따른 보수 수령 금지(단, 실비 변상은 제외), 겸직내용 공개 이랬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보수가 사외이사직 해서 250만 원, 200만 원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 간다더라 그런 비난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긴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논의의 초점은 보수에만 초점을 맞춰 놨다는 말이에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위에 있는데 LH 관련 무슨 산하단체인지 개인 기업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지.

○김관영 위원 그 말씀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맨 밑에…… 적어도 그것은 회피를 시킨 것이지요. 겸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소위 문방위나 이런 데는 적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아니지.

○소위원장 정희수 내가 3선 의원을 하니까……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꼭 해당 상임위에 없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다 미칠 수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당연하지.

○소위원장 정희수 물론 해당 상임위 같으면 100% 영향력을 미친다 치면 나머지 쪽은 7, 80% 이렇게 영향력이 미쳐지거든요. 또 하나 그 상임위원회에, 선임 배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전부 다 법사위를 안 가려고 하는 것이야, 옛날에. 또 건설 관련되면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것은 경험입니다, 주변 동료 의원들 간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4년간, 휴업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박 간사도 휴업을 하셨다면서요?

○박범계 위원 예.

○소위원장 정희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FM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공익을 하게 되면, 그리 들어가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 적은 실비도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월급은 안 준다 해 놓고 활동비로 다른 것을 또 주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허용을 영리 이렇게 모든 것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비 주면서 노동자하고 비교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일부 기분이 언짢아서 우리가 뭐 노동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여야에 다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논의의 초점이 4년 세비 주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국회에 전념하라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농구협회, 전체 축구협회 회장이다, 이것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관영 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

○서영교 위원 지금은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 축구협회 회장을 겸직했다든지 옛날에 어떤 의원은 씨름협회 회장을 겸직했다든지 그러면 사실 의원의 힘으로 그 협회가 비용을 좀 모은다든지, 원래 체육회들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는 데 힘을 쓴다고 그들이 국회의원을 모시는데 그런 것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지금?

○함진규 위원 되고 안 되고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초점은 그것이라는 것이지, 되냐 안 되느냐 그것은 더…… 우리가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것이냐 그것은 논의사항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나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드릴까요?

왜 스포츠 이쪽에 정치인들,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정치인을 모시려고 하느냐, 바로 스폰입니다. 그러니까 압력, 다른 것으로 해서 많이 받아 달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우리 국회의원이 안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오너, 사주들 있잖습니까? 이건희 회장이다 또 박용성 회장이다, 2세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로 가서 실질적으로 자기 돈 내 가지고 그쪽 편에, 체육 발전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를 어느 날 갑자기 막 별

의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리로, 스포츠하고 이상한 데 막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볼 때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만약에 또 뭣하면 그쪽 분야의, 스포츠의, 체육인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이 수장이 되고 스폰은 또 다른 사람 쪽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자리를 정치인들이 잡아먹어 버리니까 맡아야 될 사람은 못 맡고 엉뚱한 사람들이…… 자리 수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년 의정활동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뒤에 보니까 미국도 전혀 거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선진 사례, 우리가 한 것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서영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동네에 축구협회가 있는데 '국회의원님, 명예회장직 좀 맡아 주시지요'…… 우리는 구청장들이 다 예를 들면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함진규 위원 그것은 논의하기 나름이라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냐 하면요, 여기에서 저희가 범위를, 6인소위가 많이 고민해 가지고 이것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가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이 바라거나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겸직 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여기에서 세비 받고 다 일하고 있는데 또 교수 하면서 받는다든지 변호사업 하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사외이사 하면서 받는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 하지 마라 이것이 대중적 시각이지, 제가 보기에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단체 그런 것까지는 대중적 시각은 아닌데 지금은, 그래서 보수 얘기로 가게 된 것 아닌가, 논의를 하다 보니……

우리가 논의해 놓은 것을 놓고 보면 '그러면 체육회 그것도 안 된단 얘기지요?' 이러고 가는데 실제로 논의는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시작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시작은, 너무 많은 것을 제한하는 것보다, 저는 초선이니까 이런 회장을 할 단계도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곳에서 지금 위원장님 의견으로 정치인이 가셔서 다른 사람이 못 하는, 자리를 막는 문제점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활성화되지 못한 곳은 또 정치인이 가서 도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비영리일 때는. 그런 것이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이 겸직 금지만큼은 보수 받고, 우선 지금 대중적으로는 보수 받으면서…… 그리고 공익목적의 변호사도 제가 보기에는, 공익목적의 변호사는 굳이 국회의원인 사람이 공익목적의 변호사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그냥 힘을 실어 줘도 공익목적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목적의……

○박범계 위원 공익목적의 변호사는 제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인데 사실 이것은 얼마든지……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국회의원으로 오히려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공익일 때 더 힘이 있지, 변호사로보다는.

○함진규 위원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구분하는 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명확하게 구분……

○서영교 위원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김관영 위원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말씀을 잠깐 드려 볼게요.

○함진규 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앞에 두 분의 변호사가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결례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쇄신에서 다루려면 겸직 금지에 대한 원칙적인 것에 예외를 많이 두는 것이 안 좋아요. 욕먹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4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떨어지면 또 이쪽으로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본업이, 변호사들이 얼마나 좋아요? 떨어지면 또 그리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아예 이런 것도 예외사항을 두지 말고 다 그냥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쇄신의 목적에도 맞지 이것을 자꾸 예외사항을 두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예외로 둔 것에 관해서 그 취지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익목적의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박범계 변호사님은 아예 지금 이미 휴업을 해 버렸고 저는 사실은 지금 겸직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일체 금지를 한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공익목적의 변호사는, 뭘 공익목적의 변호사냐, 이것은 변호사법에, 딱 시행령에 나온 것에 딱 국한, 지금 여기 말은 안 썼어요. 변호사법 시행령 몇 조에 따른 공익목적의 변호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법 시행령에 보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익으로 본다, 그것 이외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그때 저쪽 소위에 김도읍 위원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것도 다 없애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산 참사 사건이 있다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에 국회의원이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름을 올려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올려 주는 것인데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순수하게 그러면 공익목적하고 사익목적하고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의 변호사, 공익목적은 거기에 국한되자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비영리 공익법인,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인데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공익목적의 변호사건, 비영리 공익법인의 단체건 어느 경우이든 간에 겸직을 하려면 이것은 반드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해라, 설사 공익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취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리업무의 경우는 제외' 이것은 또 사회적 기업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적 기업의 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의원님들이 꽤 많더라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알고 보니까 영리기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서 그러면 그 의원이 대표이사 한다 해서 무슨 돈을 받느냐?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맡아 달라고 해 가지고 오랫동안 맡아 왔는데……

○함진규 위원 잘못된 것을 이제는 끊어야지.

○김관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아예 사회적 기업이나, 적어도 그것도 영리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체 끊자라고 하면 이것은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쇄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함진규 위원 죄송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사건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소외되는 사람을 대변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만 되는 것이지, 수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 대변하려고, 그것은 대변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쪽에서는 대변이지만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논쟁거리예요. 얼마든지 인권변호사도 많고 정치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김관영 위원 저도 사실은 진짜 동감합니다.

○서영교 위원 동의니까, 그러면 동의로 끝!

○김관영 위원 저도 진짜 동감이에요.

○서영교 위원 공익변호사는 동의로 끝!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변호사이지만 휴업을 딱 해 놓고, 그렇지만 자기가 변호사 아닙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나중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으면 되지 양쪽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박범계 위원 동의할 수 있어요.

○김관영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그래서 오히려……

○박범계 위원 공익목적 변호사는 동의……

○소위원장 정희수 이것은 아예 변호사는…… 전문직 있잖아요? 변호사 의사인가 이런 것은 휴업을, 다른 쪽에 되는 것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조그마한 단체의 고문 그것은 관계가 좀 없고 예를 들면 큰 농구협회다 큰 그런 쪽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국회의원이 박탈하게 되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식이지요.

그러나 다른 쪽은, 다른 쪽에 지역구 이런 데 그런 것 많이 해요?

안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김관영 위원 사실은 안 해 버리면 국회의원으로서는 편해요.

○함진규 위원 편해, 편한 것이야.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그것까지 다 없애 버

리지.

○김관영 위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상갓집에 돈 내지 말고 다니라고 그래서 아예 안 내니까 좋더라고.

○김관영 위원 일체 안 하면 사실은 참 좋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오히려 관혼상제 할 때 그것 딱 해 놓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함진규 위원 좋지. 주례 서지 말라고 그러고.

○소위원장 정희수 오히려 낫습니다. 자리 하면 암암리에 역할하라고 그러거든요. 고문이다 뭐다 하면……

○함진규 위원 모두 날려 버리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이것도 모두 날려 버리는 것으로……

○박범계 위원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지요? 비영리 공익법인·단체에서 광역단위 이상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어떨까 싶네.

○함진규 위원 어디요?

○박범계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농구협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진규 위원 그것도 해석하려면 한계가 또……

○박범계 위원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가 인정하는……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자 이 말이야.

○함진규 위원 그런 단서를 하나 달아 놓는 것이 좋다……

○박범계 위원 왜냐하면 동네의 진짜 동네축구회, 조기축구회 회장도 못 해요, 이렇게 되면.

몰라,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다 안정권으로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하고 충청권은 이러면 곤란해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조기회에 국회의원이 회장을 해요?

(웃음소리)

○함진규 위원 수도권이 아니시니까……

○박범계 위원 할 수도 있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영리 빼고 비영리로 해서 어떤 단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결정은 내지 않더라도……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서영교 위원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사실 그것을 맡으면 폼은 좀 나지만 맡고 있는 내내 돈 벌어 와야지 되는 부담을 많이 갖는데, 예를 들면 핸드볼협회 이런 데에서는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는 정몽준 의원이, 하여간 다 떠나서…… 축구를, 지금도 그런가? 맡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김관영 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단서조항을 하나 넣지요.

○서영교 위원 이런 것도 좀 있어서 단서조항 넣고 조금 더 논의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방향은 그렇게 하는데, 없애는 것으로 하는데 조금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규모나 이런 것……

○서영교 위원 국익을 위해서나 이런 식으로……

○소위원장 정희수 솔직하게 정몽준 의원도 본인 안 하더라도 할 사람 많습니다, 축구협회에. 그러면……

○박범계 위원 지금 축구협회장 아니에요?

○김관영 위원 그건 옛날에……

○박범계 위원 지금은 조중연인가……

○소위원장 정희수 그렇지요. 지금 조중연……

그러니까 나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한번 주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하게 되면 못 들어와요

○박범계 위원 폼 나는 것 다 없어지네.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국무위원하고, 그때는 여기에 외부 연사가 겸직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박범계 위원 이것은 저희 당론이 아닌 쪽으로 지금 거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함진규 위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허용을 하지 말자……

○박범계 위원 아니, 그냥 놔두자……

○김관영 위원 겸직을 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허용하자……

○박범계 위원 저희 당론입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당론이에요?

○서영교 위원 당론은 아니고 당의 의견입니다.

당론이면 반대가 많을 것 같아.

○함진규 위원 집권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왜……

○박범계 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겸직을 허용하지 말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너무 내각제 요소를 너무 잡탕을 해 놓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또 더군다나 이것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데려다가 솔직한 얘기로 대권후보로만 이렇게만 하지 제대로 된 견제와 그 균형은 못 잡는 면이 많아. 그래서 저는 그런데 우리 당의 전체적인 기류는……

○함진규 위원 허용하자는 것이에요?

○박범계 위원 그냥 놓아 두자는 것이지.

○함진규 위원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학생들 강의를 하면 사실 이것을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할지, 왜냐하면 삼권분립정신에도 위배되고, 집행부를 사실 견제를 해야 되는데 입법부에서……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길들이는 쪽으로 가잖아. 길들이는 쪽으로 간다니까, 입법부를 행정부……

○서영교 위원 이것 엄청난 쇄신인데, 저는 겸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정희수 겸직을, 국무위원을 왔다갔다 해도 괜찮다?

○서영교 위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니고 양쪽이 잡탕된 지금 정치체제니까, 좀 웃기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때 여기 교수 분은 반대를 했지.

○박범계 위원 김형준 교수가 제일 세게 이것이 제일 문제다 했어요.

○김관영 위원 겸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박범계 위원 김형준 교수가 세게 얘기했어요.

○함진규 위원 그런데 저는 3선 4선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국회에 오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 이것에 꼭 들어가서 장관을 꼭 해야지만,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소위원장 정희수 나는 처음에 이것 하면 어떠냐, 겸직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최근에 자꾸 들어 보니까 삼권분립 나오고 하니까 '그래, 이것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박범계 위원 새누리당은 당론이라면서요?

○소위원장 정희수 당론, 나는 그것 모르는데……

○박범계 위원 당론으로, 이철우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소위원장 정희수 당론이래요?

○박범계 위원 예.

○함진규 위원 그런 이야기 아직 안 했는데……

그것 못 들었어요. 의총을 빠져서……

○박범계 위원 당론이라고 그랬어요, 당론.

○함진규 위원 당론이라고 그랬어요?

○박범계 위원 굉장히 갑론을박 하다가 겸직 금지, 국무위원 겸직 금지가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이러면 되네. 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겸직을 하자는 것이 당론이고, 여기는 어찌 됐든……

○박범계 위원 당론까지는 아니고 당의 다수 의견……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여당도 이렇게 하면 쇄신특위에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도……

○함진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겸직을 허용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소위원장 정희수 삼권분립의 취지로 보아서는……

○함진규 위원 맞고, 우수 공무원을 장관으로서 활로를 터 주는 게 맞지 입법부에서 여기 들어가서 장관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 후에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그런 정치체제로 간다면 몰라도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봐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러면 한다면 그 절충안으로 수를 얼마로 제한하느냐, 이것은……

○박범계 위원 그것도 이상한데요.

○함진규 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폴리페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함진규 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TV를 보면 의원들끼리는 자당의 입장이라든가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떤 현안을 가지고 충분히 대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유권자나 국민들한테 자기 전문직을 갖고 정말 가치중립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판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정말 정치인보다도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항상 끝나고 나서 정치판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려면 아예 그만두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폴리페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사퇴하고 와라 이거예요?

○함진규 위원 사퇴하고 와야 되지요, 그만두고 와야 되지요.

○서영교 위원 휴직하고 오는 게 아니고?

○함진규 위원 휴직을 하든 사퇴를 하든 하여튼 그만두고……

○서영교 위원 여기는 휴직 이야기인데.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휴직이 아니고…… 그때 김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휴직을 하게 되면 TO를 먹어 버리기 때문에 등록금은 제대로 내고 강사한테 수업을 받게 되니까 학생들에게 문제가……

○함진규 위원 이것은 아주 심각해요.

○김관영 위원 수업권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거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리고 휴직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을 동료 교수들이 다 받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5년이나 7, 8년 되어 가지고 1년간……

○서영교 위원 그러면 경쟁자 꽤 많이 없어지겠네.

○함진규 위원 경쟁자 문제보다도 학생들의 그것은 커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그것은 선택을……

○박범계 위원 지역구 상대방이……

○함진규 위원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희수 나도 학교에서 조금 이야기 듣고 관여를 해 보았었지만 이것만큼은 당당하게 사직서를 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4년 뒤에 다시 자기 학교에 재응모를 하든가 실력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가라 이거지.

○박범계 위원 좋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것은 해야 돼.

○서영교 위원 정부가 구성되면서 교수들을 사실은 데려다 쓰잖아요. 그런 경우도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

○소위원장 정희수 그것은 달라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장관을 하면 1년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보장되는 4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회직으로 들어올 때는 무조건 사직을 해라 하는 것이……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관 영역에 안 가듯이 교수들도…… 왜냐하면 그게 경쟁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학생들도 평상시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이 짜여져 있잖아요. 정치판에 기웃거리다 보니까 학생들 수업권 침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몰아서 수업을 그냥……

○김관영 위원 앞으로 할 사람들이……

○함진규 위원 그렇지.

○박범계 위원 이것은 나누어서 볼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의 직을 갖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과 국회의원을 하면서 부업도 아닌 공익적인 차원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희수 겸직 금지의……

○서영교 위원 겸임 교수는 강사인데.

○박범계 위원 그렇지.

○서영교 위원 강사라서 오히려 어려운 여건을 보강해 주는 거니까 뭐……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공익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아요? 그것을 똑같이 봐야 돼?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겸직을 왜 금지하느냐? 한쪽 일에 전념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특강은 괜찮은데 겸직 교수라는 것은 그게 더……

○김관영 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 비영리

공익법인·단체?

○박범계 위원 원칙도 다 금지이고 이것만 허용인데……

○김관영 위원 어디가 그래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다 금지하는데 그것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김관영 위원 국회직에 충실하라는 얘기지.

○소위원장 정희수 그래요. 4년 동안 충실하게 하라 이거예요.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의미 있는 것은 완전히 자격을 박탈하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김관영 위원 그만두고 오라 이거야.

○소위원장 정희수 선택을 분명히 하라 이거지. 그러면 학생들과 학교한테……

○서영교 위원 아유, 4년이 딱 확보됐지만 어떻든 4년짜리 계약직 아니야? 나는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이 4년짜리 계약직인데 비정규직이지.

○박범계 위원 교수 출신 국회의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김관영 위원 이제 잘 안 들어오겠지, 어쩔 수 없지 뭐.

○서영교 위원 비정규직이 계약직이지 뭘 그렇게……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야, 그것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

○김관영 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지금보다는 훨씬 지원자가 더 줄어들겠지요, 사직하고 하면.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그것은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함진규 위원 폴리페서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오르내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지금 매번 나오고, 저번에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겸직하는 것과 교수들 겸직하는 것, 심지어 다선 의원 중에 12년간을 휴직 내 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엄청……

○함진규 위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 중에서도 이번에 재선하신 분도 계시면서 괜찮은 교수직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그것은 그만두고…… 본인의 선택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4년 계약직이지만 잘하면 8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박범계 위원 좋다고 봐야지?

○김관영 위원 교수직 그만두는 것 저도 좋다고 봅니다.

○박범계 위원 서 위원님은?

○서영교 위원 저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해요.

○함진규 위원 국회의원이 저기 하는 것은?

○서영교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이것은 별도로 빼놓고, 유보.

○박범계 위원 아니, 우리 3명은 분명히 겸직 허용 의견을 표시한 거예요.

○함진규 위원 아, 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

○서영교 위원 나는 그게 겸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

○김관영 위원 대통령의 책임정치와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서영교 위원 정당의 책임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정희수 우리 나중에 집권……

○박범계 위원 겸직 문제는 많이 진전된 거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예, 그렇게 합시다.

○박범계 위원 적어도 우리 고유의 어떤 성격이 지금 나왔어요.

○김관영 위원 결국은 여기에 겸직 허용 범위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일체 허용이 안 되는 거네?

○함진규 위원 그렇지, 일체 허용이 안 되는 거지.

○소위원장 정희수 그래요. 강하게 나가는 거지. 말 그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을 하려니까.

○박범계 위원 거의 탈레반이에요, 탈레반.

(웃음소리)

○소위원장 정희수 11페이지, 헌정회 연로 회원.

○박범계 위원 이것은 재직 요건만 빨리 말씀……

○함진규 위원 이것은 제가 좀 총론적인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돈 좀 있으시고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칠팔십%, 거의가 나가서 지금 이러고 다녀요, 현역·전 의원들이 지금 돈 1만 원 달라고, 돈 1000원 달라고 이러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데……

○서영교 위원 그것도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해요, 미안해서.

○함진규 위원 저는 이것을 총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연금제도와 관련되어서 현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왜 비난을 받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하고 나가서 지금 뭐 받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니, 남의 것에 대한 복지는 한참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나중에 동냥하고 다니면서 자기들 복지도 하나 처리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까 그냥 하루, 이틀, 며칠 하고 이것 받는 것은 안 되고, 관련 근거 규정이 있을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50%든 세비에서 떼어서라도 적립을 해서 가는 게 당연히……

아무리 비정규직 생각을 하든 뭐든 4년 한다고 그래서, 8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차등해서 자기가 낸 것만큼…… 국가에서 다른 데와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떼든 30만 원을 떼든 세비에서 떼란 말이에요. 떼어서 국민들 비난이 가지 않도록 연금제도를 시행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의원했다는 이유 때문에 100만 원, 120만 원 받아 가니까 이게 욕을 먹는 거예요.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다, 아까 여기 제명이나 유죄 판결 확정으로 박탈당한 경우까지도 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 없애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선 한 사람은 자기가 3선 동안 자비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은 의원을 했어도 다 차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국민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무조건 싸그리 쳐 버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비 부담하고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10년 한 사람은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한 사람은 자기 낸 만큼만 받아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아무것도 없어서 국회의원 지낸 사람들이 이러고 동냥하고 다니고, 저는 참 웃기더라고요. 그게 무슨……

○박범계 위원 그것은 국회의원 연금제도이고 지금 이것은……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영교 위원 앞의 것.

○함진규 위원 연로 의원?

○김관영 위원 예.

○함진규 위원 연로 의원은 이것 연령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65세 이상인데요.

○박범계 위원 아니, 6인소위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핫이슈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주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함진규 위원 그런데 그게 소급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요? 여태까지 주었던 기득권을……

○박범계 위원 형사적으로만 소급이 문제되고 민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렇게 날려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박범계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이것 관계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이것은 제도가 아니고요, 예산에서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사실상은 못 주는 겁니다.

○박범계 위원 이것은 예산 문제도 아니고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것은 전문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 이상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이런 말이에요?

○박범계 위원 예.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국민 정서를 본다면 4년 정도는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김관영 위원 그 얘기도 그때 사실 나왔었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철우 의원님은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받는 사람 중에서 1년 미만 한 사람만 제외시키자, 그다음에 이용섭 의원님은 적어도 4년 이상 한 사람만

유지를 시켜 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철우 의원님이 오히려 사실은 1년을 하다 보니까 현재 800명 중에 40명인가 50명인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40명입니다.

○김관영 위원 40명 정도가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것 가지고 1년 이상이다, 이내다 그것은……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놓아두고 앞으로…… 현재 65세 도달 안 한 사람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못 받고, 지금 19대 국회에 있는 사람도 못 받고 어쨌든지……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박범계 위원 없어요.

○김관영 위원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김관영 위원 현재는 무조건 주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함진규 위원 무조건 다 주는 거라고?

○서영교 위원 예, 지금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다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짧게 했던 사람 빼고 그다음에 재산 많은 사람 빼고 이러자는 얘기가 지금 안인 거지요.

○김관영 위원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이고.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많은가요?

○서영교 위원 다 그 얘기가 비난이었지요. '몇 개월 하지도 않고 12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

○함진규 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현 의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김관영 위원 아니,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여태껏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김관영 위원 옛날에 받은 사람도 그렇다고 얘기가 됐었지요.

○서영교 위원 아니,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정몽준 의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다만, 100억대 이상 하는 사람도 받느냐, 단 하루 한 사람도 받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은 4년이냐 또 일정 금액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를 하고, 이게 우리 본래 취지였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쇄신 쪽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원로회원 쪽은 한번 접근……

○함진규 위원 그렇게 해도 나중에 소송 문제는 없습니까?

○박범계 위원 예, 법으로 만들면 관계없어요.

○함진규 위원 상관없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개정이지요. 연로 회원 지원금에 대한 개정이고, 아까……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지급한 것을 다 토해 내라 이게 아니고 앞으로 못 주겠다 그것은 괜찮아요.

○함진규 위원 기득권 차원에서도 그것은 뭐……

○김관영 위원 신뢰이익이 침해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다……

○함진규 위원 헌법소원 제기할 사람 없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안 그러면 하위소득 70%까지는 100% 주고 나머지 상위 30%의……

○박범계 위원 지금 소득자산 기준은 나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함진규 위원 몇 페이지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게 한 이백 얼마야?

○김관영 위원 230만 원.

○박범계 위원 230만 원인가?

○김관영 위원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런데 지금 헌정회 정관에다 위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돌아야 되는데, 230만 원이다, 160만 원이다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이철우 의원님께서 헌정회 회원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헌정회 정관으로 위임해 주면……

○박범계 위원 아니, 100% 위임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딱 230만이라는 최저 라인을 그어 놓고 헌정회가 그 이상으로 올리든지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기준이 있는 거지. 그게 첫 번째 기준, 그러니까 헌정회가 지금 230만 원이라는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거의 예상이 월……

○박범계 위원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230만 원 넘게 벌면 못 받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것은 정관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박범계 위원 얼마로 정할지는 모르지요.

○서영교 위원 230만 원이 뭐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이것도 소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고……

○박범계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은 생계를 달리하는, 가구를 달리하는 자식들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커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안 모시는데…… 그런데 물론 가짜도 있지.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몰래 아들한테 다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부조를 다 받으면서 대상자가 되는 이런 나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안 모시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굶어 죽고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김관영 위원 소득이 잡히지.

○박범계 위원 소득이 잡혀 가지고 대상이 안 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야.

○함진규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에 적용을 못 받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는 거네요?

○박범계 위원 있대요.

○김관영 위원 이렇게 하니까 한 반절이 떨어져 나갑니다.

○박범계 위원 헌정회의 최대 로비사항이 이건데……

○서영교 위원 그게 거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김관영 위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수석님,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중간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이에요. 이용섭 의원님 안, '가구 종합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이상이거나 금융·부동산 가액 합쳐서 10억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겠다' 처음 이렇게 안을 냈어요.

그러면 이 안으로 해 보니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이 23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2인 가구가 169만 원 정도고요, 4인 가구가 472만 원입니다.

○김관영 위원 그래서 나이 65세 이상 들면 대개는 2인 가구니까 2인 가구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69만 원이다, 그러면 169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못 받는 것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120만 원 지급 못 하는 것……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팔백몇 명 중에 사백몇 명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김관영 위원 한 반절이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박범계 위원 반란이 일어난대요.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난리 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철우 의원님이 '이것은 너무 스트릭트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으로 해서 헌정회 정관에다 우리가 그냥 넘겨 가지고 그 사람들 스스로 정하게 하자' 이렇게 안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은 자기의 플로우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이 돼요. 그다음에 또 자식이 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2개를 합친 것이, 아까 보면 230만 원 이상 중에서 헌정회 정관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아까 갔는데 목요상 헌정회 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왔어요.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라고 우리한테 이것을 넘기면 우리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법률로 좀 정해 줘라. 다만 무엇으로 정하느냐? 금융·부동산 가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제외하는 것으로 해 줘라' 이렇게 의견을 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논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지금 얼마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120만 원입니다.

○함진규 위원 그 120만 원 갖고 이렇게 그냥……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이것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안인지 그것을……

지금은 이것은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우리 함 위원 이야기한 대로 차제에 만약에 연로 회원 지원금을 폐지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 연금제도를 우리가 부담하면서 합리적인 안은 무엇이냐,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관영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만약에 폐지한다면 이렇게 하고, 지금 기존 안은 지원금 폐지냐 안 그러면 개정이냐, 지금 우리가 나오는 그것을 폐지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지한다면 나머지 대안을 나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김관영 위원 이 얘기는 아까 우리 함 위원님이 결국은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이 개정안 내는 데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원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있는 제도에서 쉽게 탁탁탁탁 해서 개혁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것부터 좀 하자, 일단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의원연금제도는 차차 의논을 하자.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헌정회 회원들의 반발을 그래도 최소화하면서 의원들이 가장 개혁을, 우리 나름대로 포기했다고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19대 의원부터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전에 17대 의원 했다가 지금 65세가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65세가 되면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못 준다,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얘기 나왔을 때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가야지, 이게 의원연금만 떼어져서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면 또 비난의 대상이 돼요.

○서영교 위원 덤터기를 쓰지.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예 나왔을 때 싸그리 다 정리를 하고……

아니, 의원들이 자비 부담 하겠다는데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10%를 받든 50%를 받든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자기 자부담 한다는데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지.

○소위원장 정희수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국회의원연금이 별도로 만들어질 것인지, 일반 국민연금을 좀더 전환해서 공무원연금으로 할 것인지, 그 안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다 들어서 합리적으로 의원연금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박범계 위원 찬성하고, 지금 여기의 핫이슈는 재직요건이에요.

재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게다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가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 생각에는 소득자산 요건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직요건은 빨리 논의해서 총선 원구성 지연 방지 얘기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소위원장 정희수 그럽시다. 하는 데까지 빨리 해서……

○함진규 위원 재직요건 이것도 기존 의원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1년으로 하면 40명 정도가 날아가요.

○소위원장 정희수 1년으로 하면 40명이 날아가고……

○박범계 위원 4년으로 하면 많이 날아가요.

○소위원장 정희수 40명이 날아가든 100명이 날아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저 정도 되면……'

○박범계 위원 1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철우 의원님 안처럼……

○함진규 위원 아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겠구나.

○박범계 위원 지금 6인소위 안에는 재직요건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용섭 의원님 안처럼 4년 이것은 너무 과하고 1년……

○소위원장 정희수 4년 해야 국회의원 했다고 하지 않나요?

○박범계 위원 그러면 절반으로 2년.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주로 문제되는 사람이 보궐선거로 중간에 들어와서 한 번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승계한 사람하고 이게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나도 한 번 했는데, 다만 기간은 1년 반 했다 이거야, 1년 했다 6개월 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재선 의원도 옛날에 중간에 몇 개월 자투리 자투리 해서 희한하게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위원 4년은 너무 래디컬(radical) 해요.

○서영교 위원 그런데 한번 잠깐만 돌아보면, 함 위원님 헷갈렸죠? 재직연수 이런 게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당되는지……

○함진규 위원 그런 게 있었지.

○서영교 위원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1년 하고도 돈을 120 받아? 한 달 하고도 받아?' 젊은 나이에 한 달 했어, 사실 국민들은 곧장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처럼 젊은 사람이 비례를 한 달 승계해 가지고 한 달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국회의원 끝났는데 그다음 달부터 제가 120만 원씩 받는 줄로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 세월 있다가 받는 거고, 65세는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은 어른들이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바꿔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인식이 아니라 홍보 부족이라니까.

○서영교 위원 홍보 부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논의하다가 1년으로……

○박범계 위원 진실과 오해.

○서영교 위원 그렇지, 진실과 오해. 아니면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맞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들도 국민연금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의원연금으로 가든 이렇게 하되 '우리가 받는 것도 65세 이후입니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만두면 받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라서 얄미운 거지.

○소위원장 정희수 '얄미운 당신'이야.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너무나 다 맞춰 갖고 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다치는 건데 기존에 있던 어른들만 다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미국은 보면 5년 넘으면 연금을 받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른 얘기지만 차등해서 하는……

○박범계 위원 저 10분 뒤에 일어나야 합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여기에서 2년 얘기도 있고 1년도 있고 한데, 2년만 하고 다 받아먹느냐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함진규 위원 그것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을 수 있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대기하고 있는 사람부터 안 받고요, 저희들도 안 받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받아요' 하면 나는 사실은 딱 맞는 것 같은데……

○김관영 위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

○서영교 위원 '우리 안 받아요' 원래 맞는 건데, 그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박범계 위원 우리 당 얘기 좀 할게요. 우리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개혁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유대운 의원이 아까 점심 먹는데 그러더라고. 그 주위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몇 달 한 사람들 이거 받는 것이 제일 핫이슈라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사실은 몇 달 한 사람이 받는 게 핫이슈야.

○박범계 위원 몇 달 한 사람도 받는 것.

○서영교 위원 한 달 하고도 받아? 이게 보통……

○함진규 위원 우리 전문위원은 실무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범계 위원 그래서 1년의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게 주위에 있던 다수 의원들이 했던 얘기래요, 우리 당 의원들이.

○함진규 위원 몇 달 하고 받는 것 때문에 이런 비난 가능성이 많은 건데……

○김관영 위원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래도 국회직을 하면서 나라에 공헌한 것에 대해서 보상 비슷한 개념인데, 불과 1년도 안 한 사람이 나라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다고…… 4년 한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 거지요.

○함진규 위원 전문위원님이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제도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한 달 두 달 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지원제도가 덤터기를 쓴

겁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냐 2년이냐 4년이냐는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4년 이상 되는 사람해 갖고 그 후에 재선해서 계속 이렇게 간다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현재 1년 제한하든 4년 제한하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의 법적인 성격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못사는 사람을 후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보조용도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공로주 비슷한 거예요. 이 성격은 국가를 위해서 다년간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지원이야. 연금도 아니고……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다년간이라는 것은 말이 되는데 다월간 하면……

○박범계 위원 다월간은 아니다……

○김관영 위원 원래는 스톡옵션도 적어도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함진규 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보완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철우 의원 얘기하신 대로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데 이거를 또……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이제 부담스럽다, 위원장은 확 폐지하고 싶으신데……

○김관영 위원 4년으로 하면 몇 명 잘려 나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179명 정도입니다.

○함진규 위원 4년으로 하되, 그중에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생활 따지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함진규 위원 아니, 왜 그게 안 돼요?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몇 명인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함진규 위원 그걸 할 수가 없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확인이 안 됩니다. 헌정회조차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1년 이상으로 하면 몇 명이 날아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40명입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40명에 대한 금액이 사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되느냐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노인네인데……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온 거지.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여기는 1년 이야기를 하고……

4년 정도는 되어야 국민의 눈높이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함진규 위원 이거 여론조사 한번 해 보지요?

○서영교 위원 눈높이는 '국회의원이 무슨 연금? 무조건 120만 원 줘? 폐지해' 이거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일단 이건 폐지하는 거야. 무조건 폐지인데,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지.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전체 모였을 때……

○박범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됐는데? 1년?

○김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 4년 하면 참 좋은데요. 앞으로 위원장님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박범계 위원 다음 선거에 다들 오셔서 낙선운동 한다니까……

○함진규 위원 우리가 잘라 버려? 우리는 또 보수당이라고 더 욕하지……

○김관영 위원 아니, 이철우 의원님이 1년 안으로 갖고 왔다가 자기가 법안 내놓고 나중에 헌정회원들한테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거 40명 가지고 내가 추접스럽게 뭐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 그러면 앞으로는 안 받겠다'……

○박범계 위원 국회에서 사투리도 못 쓰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 폭폭하다든지 추접스럽다든지……

○함진규 위원 이거 의총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총 할 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민주당에서도 의총 때 물어보시고……

○소위원장 정희수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김관영 위원 이걸 사실 저희들이 오늘 '재직기간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의원님들이 '야,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 재직기간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진규 위원 저는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으로 하되 나머지 탈락되는 분들이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런데 헌정회에서 그것도 못 하나?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누구 말마따나 몇백억씩 재산 갖고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 120만 원 줘 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욕만 먹는데, 그중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추려서 지원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파악이 어려운가요?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인사청문제도는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함진규 위원 이건 그러면 유보하자고요. 끝이 없으니까 유보합시다.

○소위원장 정희수 이건 유보. 결정은 아직 내지 말고 기간을 두는데 1년이냐 2년이냐 4년이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서영교 위원 그것은 좀더 논의를 해야 돼요.

○소위원장 정희수 기간을 두는 것은 오케이.

그리고 원구성 지연 관련하고 인사청문회하고는 다음에 하기로 하는데, 일정을 언제 한번 잡을까요? 국감 끝나고 나서 한번 잡아 보세요.

○박범계 위원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은 서영교 의원안대로……

○함진규 위원 몇 페이지인데요?

○소위원장 정희수 우리가 날짜를 미리 한번 잡고 가지요.

○서영교 위원 24페이지래요.

○김관영 위원 서영교 의원님이 아주 탁월한 법안을 내셔서 이대로 하시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이것은 나중에, 나도 인사청문회를 강화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논의를 합시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시면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건데……

○소위원장 정희수 몇 쪽이에요?

○서영교 위원 24쪽요. 무리가 하나도 없는……

○함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 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

공직후보자 위증처벌형량 1년 이상 10년 이하는 너무 센 것 같아.

○박범계 위원 이건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소리인데……

○서영교 위원 아니에요. 이게 뭐에 나오는 거냐 하면 국감에서 위증했을 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국감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나는 청문회 할 때마다 그런 걸 항상 느끼는데,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 참석해 봤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아니에요. 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떠들 필요가 없다고 봐. 조용히 검증해서 아니면 우리가 탈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피고인 피의자 다루듯이 속된 말로 조져 버리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 피의자는 위증을 할 권리가 있어요. 피의자는 위증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저거니까……

○함진규 위원 피의자가 위증의 권리가 왜 있어요?

○김관영 위원 위증은 아니지만……

○서영교 위원 위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증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게 그건 피의자가 그런 거고, 이건 피의자하고 다른 거예요.

○함진규 위원 이건 공직후보자한테 안 맞아요.

○서영교 위원 피의자들은 변명할 권리가 있지요.

○박범계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쇄신특위 위원님들의 수준을 이제 아셨으니까 위원장님도 이걸 강화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이 한번 중재안을 내셔 가지고……

○서영교 위원 하여간 이것은 국감 증인의 기준에 똑같이 적용했을 뿐이에요.

○소위원장 정희수 지금 얘기한 것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국감 증인하고 청문회는 좀 틀리니까……

○서영교 위원 국감 증인은 그래도 거짓말 할 수 있지만 나라에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공직후보자는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위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안 하면 되는 거지.

○서영교 위원 위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할 게 없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

○서영교 위원 실수야 이럴 때 무슨 1년 이상을 주겠어요.

그런데 놀래켜 주는 거지, '공직후보자는 거짓말 하면 안 돼!'

○소위원장 정희수 그건 절대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서영교 위원 공직후보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예 적용도 안 되는 건데 놀래키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희수 안철수도 거짓말을 하니까…… (웃음)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가이드라인을……

○소위원장 정희수 한번 봅시다.

이것은 나중에 하고, 다음번 일자를 한번 잡지요.

국감 끝나고 나서 소위를 한 번 다시 열어야 안 되겠어요? 지금 국감기간 동안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아니에요.

○함진규 위원 그게 안 맞지요, 국감 기간 중에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또 국감이 외부에 나가서들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소위원장 정희수 국감이 언제 끝나지요?

○입법심의관 이계인 24일까지입니다.

○서영교 위원 아이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네.

○함진규 위원 그러면 25일에 하면 되겠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25, 26일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원구성 관련해서 내일 아침에 해요, 그러면.

○함진규 위원 그러면 24일 저녁에 하면 되겠네.

운영위원회에 올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니요, 국정감사입니다.

10월 25·26일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입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국정감사면 그 날은 안 되고, 지금 남는 것은 24일 날……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날이 국정감사 마지막이신데요.

○소위원장 정희수 거기도 24일에 있어요? 우리는 23일에 다 끝나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김관영 위원 예, 저희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24일에 다 있어요?

○함진규 위원 다 있지요, 24일에.

○서영교 위원 그러면 원구성 관련한 얘기를 안 하고 24일로 가는 것이에요?

○함진규 위원 못 하지, 지금 어떻게 해.

○소위원장 정희수 안 그러면 29일이 있는데……

○서영교 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원구성 관련한 이야기를 마저 하지요.

○함진규 위원 내일 우리는 지방 가는데……

○김관영 위원 내일 저쪽 소위에서는 원구성하고 폭력 예방, 인사청문회를 의논하자고 할 텐데……

○서영교 위원 먼저 좀 해 놓으니까 그냥 논의해도 좋네.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아침에 한번 보자고?

○함진규 위원 아침에 지방 국정감사 하러 가는데……

○소위원장 정희수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되잖아.

○김관영 위원 일요일 날 저녁 때 할까요, 7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세요, 맛있는 저녁 사 주시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김관영 위원 6시에 만납시다. 일요일 6시면 올라오니까, KTX 타고 올라오면……

○함진규 위원 저녁?

○김관영 위원 예, 일요일 날 저녁 때.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함진규 위원 저는 상관없어요.

○서영교 위원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지 뭐 이런 것을……

○김관영 위원 저같이 뭐……

우리 위원장님이 더 머시나요? 저도 3시간 걸리는데.

○소위원장 정희수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함진규 위원 그러면 14일 날도 괜찮고……

어떠신가 모르겠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좀 늦게 가시고 원구성 지금 마저 해요.

○함진규 위원 숙려기간이라는 것 몰라요?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그것은 내일까지 가이드라인을 메일로 주셔 가지고……

○소위원장 정희수 그것은 내가 가이드라인을 혼자 주기는 그렇잖아, 같이 만나 가지고 해야지.

○서영교 위원 서영교 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생각하시는 것을……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서영교 안으로……

○서영교 위원 1년을 빼고 하든지, 그러면.

○함진규 위원 너무 세, 다른 형량하고 비교를 해야지 감정적으로만 하면……

○서영교 위원 감정적인 게 아니라니까.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오시는 양반들이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것도 동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 안처럼 '1년 이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법이거든. 이것보다는……

○함진규 위원 공직 취임을 박탈하는 것 그런 것이 더 낫지.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떠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함진규 위원 그것이 훨씬 낫지.

○서영교 위원 그러면 '위증이 밝혀질 시에는 직을 박탈한다' 그렇게 해요.

○김관영 위원 여기에서 '이상'만 빼고 '또는 벌금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박범계 위원 벌금형도 넣고……

○김관영 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직 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박범계 위원 넣고 '공직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게, 위증 형량과 관계없이.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저는 형량 양보해도 돼요.

○소위원장 정희수 위증의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벌금도 갈 수 있고 나중에 그 직을 박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함진규 위원 판사 하셨으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박범계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드시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우리, 그것밖에 쟁점이 없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그것 나머지 사람들도 알게……

○함진규 위원 자료제출 시한 이것은 잘 하셨어요.

이것을 10시간 전에 주는데 어떻게 보고 와요?

○박범계 위원 또 총선거 후 원구성 지연 방지 이것도 한번 보시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지연 방지는 자동으로……

○박범계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게, 내가 보기에 국회는 먼저 선점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내가 배운 교훈이에요, 교훈.

○소위원장 정희수 원구성 쪽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자동으로 하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상임위 배분에 있어 갖고 다수당이 100%를 다 갖는 책임정치를 하느냐, 안 그러면 의석 비율대로 수를 정해 놓고 1당이 먼저 상임위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2당이 남은 것 중에 선정하고 그다음에 3당이 선정하는 것……

○박범계 위원 지그재그로……

○김관영 위원 아니, 그것은 지그재그가 아니고 그냥 10개를 먼저 다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져가고……

○박범계 위원 아니, 뭐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이지.

○함진규 위원 그게 제가 주장했던 건데요……

○소위원장 정희수 지그재그가 아니고 1당이 만약에 의석수 같으면 몇 대 몇이라고 나올 것 아니에요.

○함진규 위원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winner takes all' 이긴 데서 다 가져가는 것……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인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함진규 위원 그것은 너무 혹독하다 이래서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다수당이 된 데서 먼저 자기들이 10개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주는데 정치학자들이 또 '좋다, 그런데 야당이 굉장히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장은 야당한테 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것은 뭐……

○박범계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서영교 위원 지그재그가 제일 좋겠네요.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한을 언제까지 정하는 것은 옳은 것 같아요.

○함진규 위원 그것 의미 없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일단 개회는 자동으로……

○함진규 위원 언제 시한을 안 정해서 못 했나?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자동으로 개회하는 것으로……

○박범계 위원 그것은 좋아, 그것도 괜찮아, 큰 의미가 없어.

○함진규 위원 지금 국회법에 보면 정기회는 못이 박혀 있잖아요, 아예. 국회법에 정기회는 아예 박혀 있어요. 9월 언제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될 것 없고 중요한 것은 4월 달에 총선 치르고 나서 첫 회의 하는 것이 임시회잖아요, 임시회. 임시회는 이것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고, 날짜가. 언제 하라는 그런 개괄적 규정은 있어도 '언제 딱 하시오' 이렇게 정기국회마냥 못 박혀 있지가 않아요. 그것을 못 박자는 거지.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상임위원장 선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임위원장만 자동으로 딱딱 선출되게 법으로 규정해 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간단한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그것이 키예요.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진복 의원님 안 그대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10개다, 8개다 이렇게 가져가면 새누리당에서 먼저 내가 갖고 싶은 것 10개 다 가져가고 이쪽에서 8개 가져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 가져가고 하나 가져가고 하나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소위원장 정희수 지그재그는 머리 아파, 또 그것 갖고 신경전을 하니까.

○김관영 위원 왜요? 18개 딱 놓고 지그재그로 갖고 싶은 것 하나씩 위에서부터 딱딱 하면 그것 간단하잖아요. 왜 싸워요?

아니, 다수당이 먼저 선택권을 갖고 내가 먼저 하나 가져가고 그다음에 너 가져가라, 그다음에 나 하나 가져간다, 너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죽 나누면 쉬워 버리잖아.

○소위원장 정희수 처음부터 가장 좋은 것이 미국식은 완전히 100% 갖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이 만약에 18개다 하면 1당이 먼저 13개 다, 고민하고 13개 갖고 가라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것 중에 2당이 얼마 갖고 가고 3당이 얼마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김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대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싸울 것도 없어요.

○김관영 위원 20대부터 적용하도록 하면 사실 우리는 마음 편해요, 그렇게 해 버리면.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요, 20대부터 그렇게 정하는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어차피 20대부터 아니에요?

○김관영 위원 그러니까 20대부터 하도록 하면, 다음번부터 적용되니까……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자동으로 개원을 하고,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게 하는 거고 며칠날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선출하게 하고 상임위원장도 자동으로 일정을 맞춰 갖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배분하게 되면 주르륵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지금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함진규 위원 이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을 뿐이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다 나와 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회의를 못 할 뿐이지, 지금도 자동으로 '의장·부의장을 6월 5일 날까지 해라, 상임위원장 선거는 6월 8일 날까지 해라' 다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거기에다 만약에 그때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원내대표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 책임을 단서 조항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글쎄요, 그것까지는……

원내대표부는 또 다른 조직인데 국회법에다 넣기가……

○함진규 위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해 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욕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이 법에 정한 날짜를 못 지키는 것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진복 의원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관영 위원님께서 '아, 이것은 20대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안은 다수당이 먼저 갖고 나머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니까 이진복 의원님 안이……

○서영교 위원 이진복 의원님 안이 다수당이 10석을 먼저 갖는다 그러면 10석 갖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진복 의원님 안은 밑에 보니까

지그재그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지그재그는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요?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 먼저 선택' 이렇게 돼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10개면 10개.

○서영교 위원 10개면 10개?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얘기했던 것은 누가 10개를 갖느냐, 9 대 9로 하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의석수에 따라서 그 규정을 지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것은 배분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배분 비율로 되어 있고 8개, 10개인데 어느 걸 가져갈 것이냐가 논란이 됐으니까 이진복 의원님께서 그러면 다수당이 먼저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선택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 아니냐라고 안을 내놓은 거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방금 사사오입 해 갖고 10개냐……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는 뭐였냐 하면 10개, 8개였는데 전체 비율로는…… 민주당 대 새누리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야권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로는 9 대 9로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쪽 합친 것에 다 하나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런데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교섭단체가 아닌 데는 고려를 안 하고……

○함진규 위원 지금 교섭단체가 15명이에요, 20명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20명입니다.

○함진규 위원 그게 안 되면 못 주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어떻든 이번에 그 얘기는 있었다고.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논란을 계속 했었다고.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된 경우에 비율로 나가는 거지, 비교섭단체는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서영교 위원 동의해요?

○박범계 위원 아니, 이것은 더……

○서영교 위원 더 논의해야 돼.

○박범계 위원 이것은 논의가 엄청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첫째가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은 지금 현재의 국회법 구조상으로 볼 때 좀 달리 봐야 될 측면이 있어요. 여가 될지 모르고 야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진짜 정당을 떠나서……

제가 보는 객관적인 기준은 원래는 예결위원장은 야당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야당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것의 가중치를 몇 개로 볼 것인가는 또 검토를 해서 2개 위원장이지만 그냥 하나 하나라고 보지 말고 그것이 적어도 한 3개 정도 위원장의 값어치가 있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것을 3개로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교섭단체 배분하는 게 그것이 2개로 안 들어가요? 예결위하고 법사위가 여기 안 들어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다 같이 들어갑니다.

○서영교 위원 예결위원장은 거기 안 들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아니요, 다 같이 들어가니까 지금 박범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원칙은, 방향은 비율에 따라서 하되, 순서대로 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하자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는……

○박범계 위원 그거 메모했어요, 방금 것?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것은 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더 협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협의해야지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원장 정희수 폭력에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 폭력이 중요해.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잠깐만, 이거 마무리를……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마무리는 상관없으십니

다.

○박범계 위원 의결정족수……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일부는 안 하고, 일부는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거쳐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그러면 날짜를 정하고 가지요.

○박범계 위원 그거 넣읍시다. 저도 오늘 가만히 보니까 모양이 안 좋더라고, 본회의에서 서로 야유하지 않는 것.

○함진규 위원 야유금지법?

○박범계 위원 예.

○함진규 위원 그거 내가 주장하는 것인데……

○박범계 위원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야유를 해도 크게 좌우하지 않으니……

그런 게 나는 국민에게 제일 보기 좋은 거라고……

○소위원장 정희수 다음 날짜를 정하고 가야지, 다음 날짜.

○박범계 위원 17일?

○소위원장 정희수 17일은 수요일인데, 나 국감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수요일 날 아침에 하면 어떻습니까, 한 7시에?

○함진규 위원 평일 날은 안 되지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해야지.

○김관영 위원 아니, 수요일 날은 대개 국감을 쉬는 데가 많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자료 정리가 많거든요.

똑같은 것은 아닌데, 위원회마다 좀 다른데요.

○김관영 위원 법사위나 국토위 같은 데……

국토위는 수요일 날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일반적으로.

○함진규 위원 없어요?

○김관영 위원 국토위잖아요. 국토위는 매주 수요일 날 없거든요.

○소위원장 정희수 아니, 수요일 날……

○김관영 위원 10일 날, 17일 날 없어요.

○함진규 위원 우리한테만 맞추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소위원장 정희수 다른 사람들은 어떤데?

○함진규 위원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위원회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10일 날 할까요? 10일 날 아침 7시 반부터 조찬을 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박범계 위원 10일 아침 저 안 돼요.

○소위원장 정희수 10일 날 아침은 안 돼요?

○박범계 위원 전날 지역구……

○소위원장 정희수 전날 지역구 가니까?

그러면 10일 날 몇 시에 하면 돼요?

○박범계 위원 전날 저희들이 밤 12시에 끝나요. 그날 부산지검이라 거의 전쟁이에요, 거기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10시부터 하면 어때요?

○박범계 위원 비행기 타고 와도 힘들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10일 날 오후에 해야 되나, 10일 날 오후 2시?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그러면 17일 날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17일 날은 내가 대전에서 국감 있으니까 안 되고, 10일 날 오후 2시……

○박범계 위원 오후 3시……

○함진규 위원 며칠날요?

○소위원장 정희수 10일 날.

○함진규 위원 우리는 경기도선대위 발대식이 있는데, 2시에.

○소위원장 정희수 그러면 안 되겠네……

○박범계 위원 오후 4시.

○소위원장 정희수 오후 4시?

○박범계 위원 예, 오후 4시면 되잖아요.

○함진규 위원 그러면 4시에 하시든가요.

○소위원장 정희수 4시에 합시다.

10일 날 4시, 2차 소위.

○함진규 위원 장소가 여기 318호?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장소는 여기에서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희수 예, 장소는 여기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날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 관 영　박 범 계　서 영 교　이 진 복
정 희 수　함 진 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민 수
입 법 심 의 관	이 계 인